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7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3월 13일

발 의 자 : 정진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상훈·김화숙·이영실

박기재·김달호·김정태

노식래·김제리·고병국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영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해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,
- 시장의 책무에도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더불어 새롭게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도록 하여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중단 등 운행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힘써 대중교통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함(안 제5조제3항).
- 나. 시장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·유지시키기 위하여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추가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
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 중 “시설”을 “대중교통시설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대중교통보건위생)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·유지시키기 위하여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해(危害) 방지를 위한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대중교통보건위생) <u>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(危害)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9조(대중교통보건위생) <u>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·유지시키기 위하여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해(危害) 방지를 위한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위해(危害) 방지를 위한 방역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(제5조제3항)를 신설하고 대중교통보건위생(제9조)의 시장의 의무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 - 안 대중교통보건위생(제9조)에 의해,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위해(危害) 방지를 위한 방역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본 개정안에서는 시장의 노력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
담 당 관
정책조사팀장
분 석 관

예산정책담당관

남승우

여차민

이수아

☎ 02-2180-7944

e-mail : sua8873@seoul.go.kr